

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일

피승계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서명) (국문/영문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소재지(국문/영문) (전화번호:)	
승계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서명) (국문/영문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소재지(국문/영문) (전화번호:)	
사용어선	어선 종류(국문/영문)	
	선명(국문/영문)	
	어선번호	톤수(톤)
	마력(HP/PS)	국제해사기구 번호(IMO No.)
	주 어업	그 외의 어업
원양어업 허가번호		
원양어업의 종류(국문/영문)		
조업수역 (국문/영문)		
원양어업의 시기		
포획물·채취물 종류(국문/영문)		
허가기간		
지위 승계 사유	[] 상속	[] 매입
		[] 임차

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(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. 사업계획서 5. 선박등기사항증명서 6.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3. 선박검사증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